

를 함(안 제22조제1항).

자.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피치료보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음(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카. 심의위원회는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중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타.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중료된 때 및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 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위탁된 보호관찰이 개시됨(안 제32조제1항).

파.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됨(안 제35조제1항).

하.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거.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치료보호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47조).

너. 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음(안 제49조).

다. 치료보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58조제1항)

러.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59조).

4. "치료보호사건"이라 함은 제7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의2에 규정된 행위

파. 상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5조 내지 제14조

의 규정에 규정된 행위

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43조에 규정된 행위

차.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2조 및 제305조에 규정된 행위

자. 형법 제287조 내지 제293조에 규정된 행위

야. 형법 제276조 내지 제281조에 규정된 행위

위

사.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5조 및 제257조 내지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

바. 형법 제207조 및 제214조 내지 제218조에 규정된 행위

마. 형법 제194조 내지 제197조에 규정된 행위

위

라. 형법 제185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규정된 행위

행위

다. 형법 제177조 내지 제180조 및 제182조 내지 제184조에 규정된 행위

제174조에 규정된 행위

나.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169조, 제172조 내지 제173조 및

가. 형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규정된 행위

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말한다.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

나.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신신상선으로 무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치료보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款的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범행한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를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강에·양극성 및 양극성기타 비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한 필요한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개선과 범죄의 재발을 방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신상선으로 무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

는 치료보호대상자의 신신상선으로 무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

는 치료보호대상자의 신신상선으로 무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

는 치료보호대상자의 신신상선으로 무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Handwritten mark

청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5. "지정치료보호시설(指定治療保護施設)"이라 함은 피치료보호청구인 및 피치료보호자를 수용하여 치료·관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할) ①치료보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처우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치료보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를 청구한 치료보호대상자(이하 "피치료보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보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4조(이송) ①법원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할에 속하는 치료보호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의 병합) 법원은 동일한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 개의 치료보호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2장 치료보호사건의 절차등

제6조(치료보호)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의 정신장애상태를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7조(검사의 치료보호의 청구) ①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상실등으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는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청구함에 있어서 치료보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치료보호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치료보호청구인의 성명 기타 피치료보호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은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치료보호청구서의 부분을 피치료보호청구인,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피고사건심리중에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보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당해 사건을 치료보호사

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그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제8조(조사) 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심신장애상태를 참작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범경찰관리(특별사범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치료보호영장) ①검사는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그의 심신상실등의 상태에 비추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

2.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범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③치료보호영장이 발부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즉시 관할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 1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내지 제4항·제202조 내지 제205조 및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구속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법 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치료보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보호구속"으로 각각 본다.

④보호구속된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치료보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제11조(치료보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등)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보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보호영장으로 보

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한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즉각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피치료보호청구인의 불출석) 피치료보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공판절차로의 이행) ①법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 청구사건의 공판개시후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치료보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판절차이행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보고, 치료보호영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절차로 이행된 사건의 피고인이 치료보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경우에는 그 신병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피고인의 이송을 법원사무관에게 명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

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치료보호의 결정등) ①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치료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치료보호사건의 결정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를 받아야 할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전문가의 감정등) ①법원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견을

의뢰받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당해 감정서 또는 관찰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병상(病狀)에 기초하여 치료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청구의 각하) ①법원은 검사가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피치료보호청구인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상실등이 아닌 경우
3. 기타 치료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8조(범죄행위존부에 대한 심리의 특칙) ①법원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부에서 심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처우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하는 동안 처우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의 각하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19조(항고등) ①검사 또는 피치료보호청구인,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 및 항고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결정의 효력)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보조인) ①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변호사는 치료보호청구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그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치료보호의 내용 및 지정치료보호시설

제22조(치료보호의 내용) ①치료보호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피치료보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치료보호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피치료보호자의 심신이 더 이상 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치료보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의 결정을 할 때까지로 한다.

제23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의료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을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지정치료보호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시설의 기준, 운영, 치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의 사퇴) ①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받은 정신요양시설이 그 지정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퇴의사를 통보받은 때

에는 그 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치료보호시설이 이 법에 의한 치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치료보호처분의 집행

제26조(집행지휘) ①치료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7조(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치료보호내용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소환, 치료보호집행) ①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피치료보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치료보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치료보호집행장은 치료보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가종료등의 심사·결정) ①심의위원회는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가종료 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31조(치료의 위탁) ①심의위원회는 심신장애자등이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보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자의 보호자로부터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장 보호관찰

제32조(보호관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보호관찰이 개시

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 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위탁된 때

②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결정으로 보호관찰기간을 1차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보호관찰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치료보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④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시 치료보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피보호관찰자는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외에 치료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피보호관찰자등의 신고의무) 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의 가종료 또는 종료후의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고 가종료 또는 종료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치료보호의 집행면제등) 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된다.

②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치료보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가중료 취소와 치료보호의 재집행) 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중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보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제33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을 적용한다.

제6장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제38조(치료보호심의위원회) ①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1조(심사) ①심의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3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보호자(피치료보호자 및 피보호관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환경조사
2. 국·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민간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④피보호자 기타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2조(의결 및 결정)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장관이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중료 및 그 취소와 치료보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의료법, 약사법, 정신보건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심의위원의 해촉) ①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심의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④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치료보호자의 담당 의사 또는 보호관찰판으로 하여금 피치료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그리고 치료보호종료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43조(심의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사건에 관한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이 당해 피치료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의위원이 당해 치료보호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심의위원이 피치료보호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심의위원이 당해 치료보호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또는 보조인은 심의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

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검사의 심사신청) 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8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피치료보호자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보호자와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지 또는 귀환 조치를 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무단으로 퇴원한 피치료보호처분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신병을 인도할 때까지 그 자를 경찰서 또는 피치료보호자를 보호하기 적당한 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제49조(처우개선의 청원) ①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운영실태등 점검 및 개선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월마다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1조(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검토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치료보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피치료보호자의 수용 및 감독

제46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의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피치료보호자의 치료와 보호 및 관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행동제한등)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치료보호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치료보호자의 전화통화 및 서신수발, 보호자 및 보조인과의 면담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①피치료보호자가 무단으로 지정치료보호시설에서 퇴원하려 하거나 퇴원한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직원이 이를 제지하거나 무단퇴원한 피치료보호자를 귀환조치시

제6장 보칙

제52조(치료보호청구의 시효) ①치료보호청구의 시효는 치료보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은 결정의 확정 없이 치료보호청구가 있을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치료보호의 시효) ①피치료보호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0년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7년

②시효는 치료보호의 가중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치료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54조(치료보호처분과 자격정지)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치료보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다른 법률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업무에 관한 자격

제55조(기간의 계산) ①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기간은 그 처분

을 집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
이 1일로 산정한다.

②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보호
처분의 판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치료보호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
백한 때에는 당해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
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보호처분
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7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刑事訴訟法 및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58조(도주방조등) ①치료보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
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②치료보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보호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사실의 신고)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모해등) 치료보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모해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61조(허위진단서작성등)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
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치료감호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社會保
護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치료감호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社會
保護法상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지정치
료보호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社
會保護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치료보호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保安觀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監護”를 “범죄행위를한심신장애

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치료보호”로 한다.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社會保護法 附則 第4條의 규
정에 의하여 治療監護施設로 代用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支所의 長은 당해 監護所 또는 그 支所내에서”를 “지정치료
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지정치료보호시설 내에서”로 하고, 제5조제2
의2호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을 “지정치료
보호시설의 장”으로 한다.

③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監護施設 또는 治
療監護施設”을 “범죄행위를한심신장애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로 한다.

④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을 “범죄행위를한
심신장애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치료보호 또는 보호관
찰”로 한다.

⑤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을 “범죄행위를한
심신장애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치료보호 또는 보호관
찰”로 한다.

- ⑥ 出入國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少年院의 長”을 각각 “지정치료보호시설 또는 少年院의 長”으로 하고, 제84조제2항중 “保護監護處分 또는 治療監護處分을 받고 收容된 後 出所한 때 또는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 收容된 後 退院한 때”를 “범죄행위를한심신장애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 收容된 後 退院한 때에는”으로 한다.
- ⑦ 國家人權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중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를 “지정치료보호시설”로 한다.
- ⑧ 民願事務處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중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을 “치료보호처분”으로 한다.
- ⑨ 腐敗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2항제2호중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을 각각 “치료보호처분”으로 한다.
- ⑩ 行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治療監護所”를 “지정치료보호시설”로 한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서상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5
----------	------

발의연월일 : 2003. 8. 28.

발 의 자 : 서상섭·이호용·김경천
김부겸·김성조·김원웅
김홍신·김희선·박명환
박승국·심재권·이성현
오영식·임종석의원
(14인)

제안이유

권위주의시대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그 성격과 기능이 형벌과 유사함에도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벌집행이 종료된 후에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시 이와 같은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는 사회복지적 기능에 의해서도 이들 범법자의 개선과 재사회화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사회보호법을 폐지함.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법률 제5179호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호감호처분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거나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중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집행을 종료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 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동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동법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동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동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동법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保護監護所·拘置所 및 矯導所”를 “구치소 및 교도소”로 한다.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서상섭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4.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이 법안은 2003년 8월 28일 서상섭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어 2003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권위주의시대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그 성격과 기능이 형벌과 유사함에도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벌집행이 종료된 후에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시 이와 같은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는 사회복지적 기능에 의해서도 이들 범법자의 개선과 재사회화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가.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에 대한 개요

사회보호법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안처분을 도입하게 된 근거법률로서 1980년 12월 18일, 당시 입법기관을 대신하고 있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보안처분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로서, 형벌이 행위책임에 의존하는 것에 비하여 보안처분은 행위책임과 관계없이 행위자의 장래위험성에 의존하며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이라는 세 종류의 보안처분을 규율하고 있는바,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감호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보안처분으로서,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근로를 과할 수 있게 되는바, 사회보호의 보안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판결주문에는 감호기간의 선고가 없는 부정기적인 성격을 가지나 7년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는 없고(제7조제3항), 사회보호위

원회가 보호감호의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제1항).

그리고 보호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벌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여(제23조제1항), 형벌과 보안처분을 엄격히 구분하고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이원주의(二元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치료감호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와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보안처분으로서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이들에게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보호감호와 달리 사회보호 이외에 피치료감호자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기간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가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규정(제9조제2항)하고 있어 절대적 부정기적인 성격이고, 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가종료 여부

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5조제2항), 집행개시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친족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8조).

그리고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여(제23조제2항) 형사제재의 집행단계에서 형벌은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대체주의(代替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와 가종료·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외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서 재사회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이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보호감호의 집행면제,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거나 감호시설에의 재수용,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있게 되면 보호관찰은 종료됩니다(제10조).

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

이번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특히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그 동안 제기되었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상의 문제점

사회보호법은 제5공화국 최초헌법(1980. 10. 27. 공포)의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1980년 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계엄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정되었는바, 동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보호법의 제정절차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 제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는 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한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1980. 10. 27. 공포된 구헌법 부칙 제 6조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동조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87. 10. 29. 개정공포된 현행헌법 부칙 제5조는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위헌적인 하자가 있음을 다룰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1996. 11. 28. 95헌바20).

2)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헌법 제13조제1항후단에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보호감호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보호감호제도와 형벌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형벌과 보안처분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 사회보호법 제1조와 행형법 제1조의 목적내용이 비슷하고, 사회보호법 제42조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를 행형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피보호감호자는 수형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보호감호처분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면서(1996. 11. 28., 1998. 9. 30., 2001. 3. 21.) 보호감호처분과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헌법 제13조제1항후단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잉처벌금지원칙의 위반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원리 중 과잉금지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한 범익침해정도 등에 비례하여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감호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형법의 누범가중처벌은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한 행위책임이 높다는 것에, 상습범의 가중처벌은 생활영위책임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모두 형사정책적인 개별예방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특히, 상습범 처벌은 보호감호와 같은 보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해석상 상습범과 누범의 이중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현행 형벌체계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형사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현행 형법 및 형사특별법이 이미 보안형을 인정하고 있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호감호제도라는 추가적 형사제재장치를 두는 것은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독일의 경우, 보안감호제를 두고 있으나 상습범가중처벌규정과 누범가중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상습범에 대한 예방구금을 폐지하고 자유형가중으로 대체한례가 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곤란성

보호감호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보호감호처분을 하거나 사회보호위원회가 집행개시 후 1년간의 수용성적을 바탕으로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판단기준이 되는데, 재범의 위험성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를 위한 전문인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고 실무적으로도 판단자의 직관적인 사후예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기준을 전제로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그 남용이나 자의적 운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은 처음부터 무리한 입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5)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보호감호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보호감호제도의 본래 입법취지는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로부터 추방이 아니라 피보호감호자를 교육·개선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것에 있으나,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청송제1·2 감호소는 시설면에서 교도소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중 최고 경비등급에 해당하는 초중구급시설이고 지리적으로도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가족과 친지와 접촉, 통근작업 등이 어려운 상태이며 교육과정도 수형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의욕고취나 사회적 자립에 도움이 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보호감호제도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관련한 입법논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보호법 자체가 지난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폐지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입법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론(대체입법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그 동안의 비판내용을 근거로 보호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부분은 폐지하되, 나머지 치료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부분은 다른 대체입법을 통하여 존속시키자는 입장입니다.

서상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과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과 치료보호법안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2) 개선론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제기된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보호감호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해악성보다는 실무관행이나 운용방식의 전근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형벌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안처분은 범죄행위에서 나타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의하여 과해지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나 직업적인 누범·상습범이 격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형벌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없으므로 보호감호제도의 존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보호감호제도의 포기보다는 형식적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 사회보호법 폐지의 입법방식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경우에 사회보호법의 폐지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은 ①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률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법과 ②폐지를 위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어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결과로써 기존의 법률을 폐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취해지며, 후자는 어느 법률을 독립적으로 폐지하는 경우에 취해집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회보호법에 대한 처리방향이 결정되어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대체입법의 부칙에 사회보호법 폐지규정을 두어 절차의 간결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신장애자들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서상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6
----------	------

발의연월일 : 2003. 8. 28.

발 의 자 : 서상섭 · 김경천 · 김부겸
 김성조 · 김원용 · 김홍신
 김희선 · 박명환 · 박승국
 심재권 · 오영식 · 이성현
 이호웅 · 임종석 · 권기술
 심재철 · 안상수의원
 (17인)

제안이유

심신장애자가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자 또는 형벌적 처벌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와 보호를 행함으로써 사회복지를 돕는 한편 이들의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를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대상자로 함(안 제2조).

나. 치료보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며, 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치료보호위원회가 피치료보호자가 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치료보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의 결정을 할 때까지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됨(안 제6조제1항).

라. 보호관찰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치료보호위원회의 치료보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고,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가 다시 치료보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된 때에도 보호관찰이 종료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치료보호대상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형사책임 무능력자이어서 벌할 수 없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피치료보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치료보호청

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법원은 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보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함(안 제20조).

차. 치료보호위원회는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카.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되고, 치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치료보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타.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위원회를 둠(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파. 피치료보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보호위원회

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2조).

하.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40조제5항).

거. 치료의 위탁을 받은 친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제8항).

심신장애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행위를 한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치료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들의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료보호처분대상자)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자로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대상자가 된다.

제3조(관할) ①치료보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보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치료보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한 치료보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2장 치료보호 및 보호관찰

제4조(치료보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보호에 처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남용을 하거나 해독작용(害毒作用)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흡입·흡연·주입 또는 식음(食飲)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제5조(치료보호의 내용) ①치료보호의 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보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피치료보호자의 심신이 더 이상 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치료보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의 결정을 할 때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시설의 운영, 치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호관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보호관찰은 개시

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외에서 치료 받기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 ②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결정으로 보호관찰기간을 1차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 ③보호관찰기간의 만료전이라도 보호위원회의 치료보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 ④보호관찰이 개시된 자가 다시 치료보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제7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치료 그 밖에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제3장 치료보호처분의 절차

제8조(치료보호사건) 검사는 치료보호처분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조사) 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심신장애상태를 참작하여 치료보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치료보호영장) ①검사는 치료보호처분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보호처분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보호처분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내지 제4항·제202조 내지 제205조 및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호구속된 치료보호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4조·제96조·제208조·제2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치료보호청구) ①검사는 치료보호를 청구함에 있어서 치료보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청구서에는 피치료보호청구인 수에 상응하는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치료보호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치료청구인의 성명 그 밖의 피치료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치료보호청구를 할 수 있다.

④법원은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치료보호청구서의 부분을 피치료보호청구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피고사건심리중에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보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보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치료보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제13조(치료보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보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보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피치료보호청구인의 불출석) 피치료보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예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공판절차로의 이행) ①법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사건의 공판개시후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치료보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판절차 이행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본다. 이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치료보호청구를 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16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

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치료보호의 판결 등) ①법원은 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보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치료보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치료보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할 법률의 조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검사 또는 피치료보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⑥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

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준용규정)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원이 피치료보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치료보호청구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치료보호처분의 집행

제19조(집행지휘) ①치료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21조(치료보호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소환, 치료보호집행) ①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치료보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치료보호집행장은 치료보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3조(가종료 등의 심사·결정) ①보호위원회는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보호위원회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24조(치료보호의 집행면제 등) 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된다.

②보호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치료보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치료의 위탁) ①보호위원회는 심신장애자등이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보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보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보

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자의 친족으로부터 치료보호시설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친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의 가종료 또는 종료후의 거주예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고 가종료 또는 종료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가종료 취소와 치료보호의 재집행) 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보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제7조의 준수사항 그 밖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장 치료보호위원회

제28조(치료보호위원회) ①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

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보호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중료 및 그 취소와 치료보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④보호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가운데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사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심사) ①보호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보호자(피치료보호자 및 피보호관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조사
2. 국·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④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0조(의결 및 결정) ①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제31조(검사의 심사신청) 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치료보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피치료보호자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보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보호위원회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치료보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3조(치료보호청구의 시효) ①치료보호청구의 시효는 치료보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보호청구가 있을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치료보호의 시효) ①치료보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0년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7년

②시효는 치료보호의 가중료 그 밖의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35조(치료보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치료보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보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다른 법률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업무에 관한 자격

제36조(치료보호의 실효) ①치료보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 또는 치료보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치료보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이상의 형 또는 치료보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37조(기간의 계산) ①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기간은 그 처분을 집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8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보호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보호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

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①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피치료보호자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치료보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치료보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타인으로 하여금 치료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치료보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⑧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친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치료감호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치료감호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치료보호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監護”를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치료보호”로 한다.

②사범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社會保護法 附則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治療監護施設로 代用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支所의 長은 당해 監護所 또는 그 支所내에서”를 “치료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치료보호시설 내에서”로 하고, 제5조제2의2호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을 “치료보호시설의 장”으로 한다.

③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監護施設 또는 治療監護施設”을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치료보호시설”로 한다.

④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을 “심신장애자등의 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보호 또는 보호관찰”로 한다.

⑤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을 “심신장애자등의 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보호 또는 보호관찰”로 한다.

⑥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少年院의 長”을 각각 “치료보호시설 또는 少年院의 長”으로 하고, 제84조제2항중 “保護監護處分 또는 治療監護處分을 받고 收容된 후 出所한 때 또는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 收容된 후 退院한 때”를 “심신장애자등의 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보호 시설에 수용되거나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 收容된 후 退院한 때에는”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중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를 “치료보호시설”로 한다.

⑧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중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을 “치료보호처

분”으로 한다.

⑨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2항제2호중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 처분”을 각각 “치료보호처분”으로 한다.

⑩행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治療監護所”를 “치료보호시설”로 한다.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

(서상섭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4.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이 법안은 2003년 8월 28일 서상섭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심신장애자가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자 또는 형벌적 처벌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와 보호를 행함으로써 사회복지를 돕는 한편 이들의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를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대상자로 함(안 제2조).

나. 치료보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며, 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치료보호위원회가 피치료보호자가 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치료보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의 결정을 할 때까지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또는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됨(안 제6조제1항).

라. 보호관찰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치료보호위원회의 치료보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고,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가 다시 치료보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된 때에도 보호관찰이 종료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치료보호대상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형사책임무능력자이어서 벌할 수 없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피치료보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법원은 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보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 자.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함(안 제20조).
- 차. 치료보호위원회는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카.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되고, 치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치료보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타.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위원회를 둠(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파. 피치료보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보호위원회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2조).
- 하.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40조제5항).

- 거. 치료의 위탁을 받은 친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제8항).

3. 검토의견

이 법안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는 동시에 동법상의 치료감호제도는 이 법안을 통하여 존속시키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치료감호'를 '치료보호'라는 용어로 표현하되 사회보호법의 치료감호 및 그와 관련된 보호관찰 부분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사회보호법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필요성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의 피치료보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행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치료감호제도는 보호감호와 달리 실제운용에 있어서 사회보호라는 목적외에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나 재사회화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이 제도는 그 입법취지에 비교적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보호법의 치료감호부분만을 존속시키기 위한 대체입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2. 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이 법안은 사회보호법에서 치료감호 및 그와 관련된 보호관찰 규정을 그대로 옮기고 있어 법안의 내용보다는 그 동안 지적되어 온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치료보호 부과요건의 강화(안 제4조)

안 제4조에 의하면 심신장애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의 치료보호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치료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므로 형법이나 관련 형사특별법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은 '재범의 위험성'이 실질적 기준이 되는바, 부정기의 자유박탈을 가져오는 치료보호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치료보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치료보호기간의 제한(안 제5조제2항)

치료보호시설의 수용기간은 '치료보호위원회가 치료보호의 종료나 가중료를 결정할 때까지'로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용기간의 최대한도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치료보호위원회에 수용기간을 위임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바, 최장 수용기간을 설정하거나 일정기간을 원칙으로 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 치료보호와 형벌과의 관계(안 제20조)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대체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치료보호와 형벌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원주의가 아닌 대체주의의 입장을 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보호법과 같이 치료보호기간이 형기에 산입된 후 잔여형기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잔여형기를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형벌의 응보주의적 시각에서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목적형주의적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응보주의적 시각과 목적형주의적 시각을 전부 고려하고 있는 오늘날의 형사정책방향을 견지한다면 잔여형기에 대하여 가석방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라. 치료보호의 세분화·전문화

치료보호의 전문성 및 교정·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치료보호대상자를 구분하고 각각 수용시설·수용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세분화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있습니다(영국, 일본 등). 정신장애자군, 마약·알코올 중독자군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은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차별화되지 않은 처우나 수용기간을 강요하는 것은 치료보호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는 바, 입법적으로 세분화·전문화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